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2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조승환·이종배·김성원

이성권 • 서일준 • 권영세

곽규택 · 정희용 · 안철수

김승수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

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u>	<u>5년</u> <u>5천만</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위</u>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②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u>1억원</u>
벌금에 처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u>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0조제1</u>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	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제2호 및 제73조제7호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u>-</u>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